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 6.14. 이연희의원 등 19인

나. 회부일자: 2024. 6. 27.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8. 19.)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11.) 상정

제2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5. 9. 22.)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
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연희의원)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유인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러한 지원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입법취지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지원사업 추진시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관련 전문성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첫째,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제1항에서는 정부가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지원(제2호), 산업디자인 개발 등을 통한 산업경쟁력 향상 지원(제3호)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기업 육성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러한 현행 「산업디자인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임.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데에 개정안의 실익이 있다고 보임.

둘째, 개정안의 입법 취지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 법(「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근거를 규정하는 경우에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하는 규정(안 제10조의2 제2항 신설)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음.

즉, 개정안과 같이 위탁 수행기관을 법률에서 명시할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문기관(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만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전문기관(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의 경우 대통령령 등에 위임할지, 혹은 사업수행방식을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 등에 위임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음.

셋째, 안 제10조의2제1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이나, 지원사업 외에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넷째,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신규 지원사업의 실시 및 이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소요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였는바, 이러한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도 법 개정 여부를 논의함에 있어 감안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김원이 위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되, 김동아의원·이연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음.

대안의 주요내용은 1인 중증장애경제인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6. 심사결과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대안반영폐기).